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관
람

기관
의
장

제1778호 2023. 9. 11.(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56호 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57호 서구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 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5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5
-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고시 제1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 8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912호 (가칭)오류2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1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914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1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917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1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918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2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921호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 3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9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 43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정책실 [032-560-4144]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3-156호

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687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9.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12-1번지

3. 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없음)

도면표 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 심곡동 · 공촌동 일원	556,431.8	-	556,431.8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3	공공청사	파출소	연희동 712-1번지	510.6	감)510.6	-	건고제690호 (1989.11.24.)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3	공공청사	• 공공청사 폐지 - 면적: 510.6㎡	• 활용계획이 없는 미집행 시설 공공청사(파출소)를 폐지하고 기조성되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주차난 해소

2) 교통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연희동 712-1번지	-	증) 510.6	510.6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510.6㎡	• 활용계획이 없는 미집행 시설 공공청사(파출소)를 폐지하고 기조성되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주차난 해소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없음)

-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없음)
- 바.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완화적용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 사.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없음)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3-157호

서구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구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전 이를 고시합니다.

2023. 9.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사취지 :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질 거주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
 2. 법적근거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시행령 8조
 3. 조사기간 : 2023. 9. ~ 2024. 2.
 4. 조사대상 : 서구 관내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곳
 5. 조사의 내용
 - 빈집 여부의 확인
 -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 빈집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 그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6. 실태조사 수행 전문기관 : 한국부동산원
-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주택과(☎032-560-45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3-15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9.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 183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9.11. 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3-9-11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00-11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 183 (원당동)	20220221	고산후리는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고시 제 2023 - 1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 칭 : 예미지트리플에듀아파트
- 공동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4로 89
- 금연구역 지정번호 : 제 66호
- 금연구역 지정범위(전체)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일자 : 2023년 9월 11일

3.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단속 개시일 : 2023년 12월 11일부터
- 과태료 금액 : 5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질병관리과(☎032-718-0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 - 1912호

(가칭)오류2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75번지 일원의 토지소유자가 우리 구로 제안한 (가칭)오류2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람·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개요

- 가. 구역명칭 : (가칭)오류2 도시개발구역
-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75번지 일원
- 다. 면 적 : 214,868㎡
- 라.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 가. 시 행 자 : (가칭)오류2구역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
- 나.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

3. 입안할 개발계획의 개요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	비율 (%)	비고
합	계	214,868	100.0	
주 거 용 지	공 동 주 택 용 지	119,862	55.8	
	단 독 주 택 용 지	99,642	46.4	
	단 독 주 택 용 지	10,545	4.9	
	준 주 거 시 설 용 지	9,675	4.5	
도 시 기 반 시 설 용 지	도 시 기 반 시 설 용 지	95,006	44.2	
	도 로	34,706	16.1	
	보 행 자 도 로	363	0.2	
	주 차 장	2,257	1.1	1개소
	공 원	7,838	3.6	어린이공원2
	녹 지	19,833	9.2	완충녹지4
	문 화 및 사 회 시 설	1,650	0.8	
	환 경 기 초 시 설	2,583	1.2	검단오수중계펌프장
	저 류 지	2,607	1.2	
	하 천	22,597	10.5	검단천
	전 기 공 급 시 설	572	0.3	

나.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 참조

4. 공람기간,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방법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과(☎ 032-560-5772)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032-718-1555)

다.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에 의견서(서면) 제출

공 램 의 견 서

사 업 명	오류2구역 도시개발사업		
공람내용	오류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제출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의 견			

인천광역시 서구 제2023-1914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23. 9. 11. ~ 2023. 9. 25.(15일간)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22거3181 등 15건(붙임 참조)		
	차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2, FAX 032-560-2793)		

3. 유 의 사 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4872)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1	22거3181	벤츠 EQC 400 4MATIC	**캐피탈(주)	2023.08.31
2	238머8037	E220 d Cabriolet	***캐피탈(주)	2023.08.29
3	30가7978	벤츠 CL550	강*정	2023.08.28
4	155가8383	BMW Active Tourer JOY RDE	***캐피탈 주식회사	2023.08.25
5	55서9638	레이	전*리	2023.08.21
6	180오5636	Mercedes-Benz S400 d 4MATIC	**캐피탈(주)	2023.08.21
7	34거3897	E300 4Matic	**캐피탈(주)	2023.08.21
8	23두0718	타이칸 4S (High. 5인승)	*****캐피탈(주)	2023.08.17
9	31라8972	아반떼(AVANTE)	최*숙	2023.08.16
10	18라0179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디젤	손*태	2023.08.16
11	84도5853	포터 II (PORTER II)	고*식	2023.08.14
12	47너6437	K7	**캐피탈 주식회사	2023.08.08
13	108러7779	쏘렌토	서*하	2023.08.04
14	51조8642	A6 40 TDI quattro	손*필	2023.08.03
15	49루7106	BMW 520d xDrive	손*필	2023.08.03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해 사용료 반환 신청 시 요구하던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개정하여 첨부자료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 첨부자료: 은행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 은행통장 사본

4.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 2023년 10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 서면이나 전화(팩스)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주 소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13층 문화관광체육과(심곡동, 서구청 제2청사)

○ 연락처

☎ 032) 560-4346 / FAX 032) 560-2748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해 사용료 반환 신청 시 요구하던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개정하여 첨부자료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 첨부자료: 은행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 은행통장 사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1918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적용을 위해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적용(제6조): 만 18세 이상 → 18세 이상
4.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 2023년 10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 서면이나 전화(팩스)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주 소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13층 문화관광체육과(심곡동, 서구청 제2청사)

○ 연락처

☎ 032) 560-4346 / FAX 032) 560-2748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적용을 위해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적용: 만 18세 이상 → 18세 이상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교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만 18세 이상”을 “18세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만 14세”를 “14세”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만 65”를 “65세”로, “만 60”를 “60세”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만 65”를 “65세”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접수증 생년월일 난에 “(만 세)”를 “(세)”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만 20”를 “20세”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9”를 “19세”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교육대상) 교육대상은 <u>만 18세 이상</u> 구민으로서 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교육대상) ----- <u>18세 이상</u> ----- -----.

관계 법령 발췌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한다.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1921호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현안해결기구로서의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신속한 회의개최 및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담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5조~9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063, 팩스 032-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안해결기구로서의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신속한 회의개최 및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담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 인사위원회 기능대행에서 전담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사항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5조~9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정의
 - * 각 국장, 보건소장, 감사 및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
 - 전담부서의 지정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전담 부서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감사 및 인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영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에 따라 운영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

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7.>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

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7. 27.>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개정 2022. 12. 27.>

1.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3.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8. 25., 2021. 12. 16.>

1. 시·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⑥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

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⑦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2021. 7. 2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제목개정 2020. 8. 25.]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19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으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의무화 됨에 따라 지원의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적용 범위, 지원체계(안 제1조~제3조)
- 나. 소송수행 등 지원 내용(안 제4조~제5조)
- 다. 소송수행 등 지원 절차(안 제6조~제13조)
- 라. 소송수행 등 지원 취소 및 반환(안 제14조~제15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063, 팩스 032-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으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의무화 됨에 따라 지원의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적용 범위, 지원체계(안 제1조~제3조)
- 나. 소송수행 등 지원 내용(안 제4조~제5조)
- 다. 소송수행 등 지원 절차(안 제6조~제13조)
- 라. 소송수행 등 지원 취소 및 반환(안 제14조~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적극행정지원 심의·의결)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범위, 방법 결정
3.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서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서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서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인천광역시 서구청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6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서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수사절차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에 따른 신

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긴급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지원 결정 시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 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3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7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5조(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4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행정종합배상공제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서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선임 지원	
징계의결요구개요	징계의결 요구	
	요구일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요구사유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서류	
<p>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p>		

관계법령 발취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7.>

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음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